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02

발의연월일: 2021. 1. 6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강병원 · 기동민

김민철 · 김수흥 · 문진석

안호영 · 이용빈 · 인재근

임종성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며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인삼 경작신고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, 인삼 경작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,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(看做)하는 제도를 도입함(안 제4조제3항ㆍ제4항, 제12조제4항ㆍ제5항,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의2제4항ㆍ제5항 신설).

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전단 중 "신고할 수 있다"를 "신고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신고를 할 수 있다"를 "신고를 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에 따른"을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"으로 한다.

- ③ 조합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,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조합등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
제12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"을 "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4항"을 "제6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(종전의 제9항) 중 "제8항"을 "제10항"으로 한다.

- ④ 시장·군수는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·군수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
제14조제2항 후단 중 "제12조제4항"을 "제12조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신설한다.

- ③ 시장·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·군수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 제17조의2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④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⑤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경작신고) ① 인삼을 경작	제4조(경작신고) ①
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렁	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	
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	
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	
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	
다) 또는 조합(이하 "조합등"이	
라 한다)에 <u>신고할 수 있다</u> . 신	<u>신고하여야 한다</u>
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	
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	
려는 경우에도 같다.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	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	
지를 관할하는 조합등에 상속・	
양수 또는 합병의 <u>신고를 할 수</u>	신고를 하여
<u>있다</u> .	야 한다.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조합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
	신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
	에,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
	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
	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
	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

<신 설>

③ 조합등은 제1항에 따른 경작 | 신고내용을 반기별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2조(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 | 제12조(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 류 제조의 신고 등) ① ~ ③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여야 한다.

④ 조합등이 제3항에서 정한 기 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 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
⑤ -----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-----

류 제조의 신고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시장·군수는 제1항 본문 또 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시장·군수가 제4항에서 정 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 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 리한 것으로 본다.

- ④ (생 략)
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인삼류제조업자는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- ⑥ 시장·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 이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에 따 른 식품의 제조·가공에 관한 영업신고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 다.
- ⑦・⑧ (생 략)
- ⑨ 제8항에 따라 시장·군수에 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 다.
- 제14조(영업자의 지위승계 등) ① 조 (생 략)
 - ② 제1항에 따라 인삼류제조업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 에 시장·군수에게 신고하여야

<u>6</u>	(현행 제4항과 같음)
<u>7</u>	<u> 제6항</u>
	·
8	
9	· <u>⑩</u> (현행 제7항 및 제8항과
같	· <u>ㅇ</u>)
<u> 11</u>	제10항
भी 14	조(영업자의 지위승계 등) ①
(ই্	년행과 같음)
2	

한다.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서 --. ----- 제12조제6항--규정하는 인삼제품류의 제조ㆍ 가공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함 께 신고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 (생략)

제17조의2(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- ③ 시장・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·군수가 제3항에서 정 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 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 리한 것으로 본다.
- 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-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

다.

제17조의2(자체검사업체의 지정

⑤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

	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
	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
	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
	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.
<u>④</u> (생 략)	<u>⑥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